

AI 발생 피해 농가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 
감면안

---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# AI 발생 피해 농가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본 AI 발생 피해 농가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은 2014년 7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- AI 발생 피해 농가에게 세제지원을 통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 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얻어 도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- AI 발생 피해농가에 대한 2014년 정기분 지역자원시설세(특정 부동산) 면제

#### 4. 검토의견

- 본 도세 감면안은 지난 2014년 1월 충북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이번 AI 발생으로 충북지역에서는 약 4개월 동안 닭, 오리 등 가금류 180만 9,000마리가 살처분 되었으며 특히 진천과 음성 은 오리의 80~90%가 살처분 되어 피해가 크게 발생되었음.  
이에 AI 발생 피해 농가에게 세제지원을 통한 지원방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 : AI 발생 피해 농가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1부.  
      끝.